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	----

제출년월일 : 2022. 10. 20.

제 출 자 : 평창군수^{1.}의

1. 제안이유

- 가. 올림픽 유산사업의 다변화와 재단 정체성 확보를 위한 재단 명칭 변경
나. 사무집행기관인 재단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하여 올림픽 개최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이에 걸맞는 책임과 운영역량 제고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재단 명칭 변경(안 제1조, 제3조)

-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 평창유산재단

다. 정의 신설(안 제2조)

- 평창올림픽 유산,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용어 정의

라. 재단 사무처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안 제6조) [제출의견 반영]

마. 사무집행기관 명칭 변경(안 제10조)

- 사무국 → 사무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2.09.16.~2022.10.6.) 결과, 제출의견 반영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개인정보 사전검토 : 개선사항 없음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평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평창평화센터”를 “유산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평창유산재단”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올림픽 유산”이란(이하 “올림픽 유산”이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이란(이하 “올림픽 유산사업”이라 한다.) 평창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등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평창평화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을 “평창유산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해”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호 중 “국내외 도시 및 평화 관련”을 “국내외의 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내외”를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국내외”로, “인센티브 관광 및 전시 행사 등”을 “전시행사 등 MICE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홍보사업”을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교육·홍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평화와”를 “올림픽 유산과”로 한다.

4. 평화 테마파크 운영

제6조(중전의 제5조)제3항 중 “올림픽”을 “재단의 사무처장과 군의 올림픽”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4명”을 “2명”으로, “3명”을 “3명,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총 7명”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제3호 중 “수익금”을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u>평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평창평화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신 설></u></p>	<p><u>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유산을 계승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평창유산재단</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평창올림픽 유산</u>”이란(이하 “<u>올림픽 유산</u>”이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u>평창올림픽</u>”이라 한다)로 형성된 <u>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u></p> <p>2. “<u>평창올림픽 유산사업</u>”이란 (이하 “<u>올림픽 유산사업</u>”이라</p>

한다.) 평창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등을 말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평창평화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도시 및 평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2. 국내외 회의, 인센티브 관광 및 전시 행사 등 육성 지원
3. 교육·홍보사업

<신설>

4. 평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과제 수행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평창유산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해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 -----

1. 국내외의 기관 및 -----
2.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국내외 ----- 전시행사 등 MICE산업 -----
3.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교육·홍보사업
4. 평화 테마파크 운영
5. 올림픽 유산과 -----

5. ~ 8.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임원)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이사는 올림픽 유산 사업,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소속 부서장 2명 이내로 하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생략)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생략)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 평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으로 위촉한다.

③ (생략)

제7조·제8조 (생략)

제9조(사무국) ①·② (생략)

③ 사무국장 및 각 단위 업무의 팀장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직원 수, 조직,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6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단의 사무처장과 군의 올림픽 -----
----- 3명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
3명,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총 7명---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10조(사무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처장 -----

업무, 인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10조 ~ 제13조 (생략)

제14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2. (생략)
3.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
하는 수익금 등

제15조 ~ 제20조 (생략)

--.

제11조 ~ 제14조 (현행 제10조부
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5조(운영재원) -----

-----.

1. 2. (현행과 같음)
3. -----
-- 수익금 및 기부금 -----

제16조 ~ 제21조 (현행 제15조부
터 제20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연락처	(033) 330 - 2018